

본고는 대한주류공업협회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해외조사팀에 의뢰하여 조사한 "캐나다의 주류산업현황" 보고서에서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게재한 것입니다.



캐나다의 주류산업 현황

목 차

1. 캐나다 주류산업 현황

- 가. 최근주류산업동향
- 나. 주요주류별 수출입 동향

2. 정부의 지원제도 및 규제

- 3. 수입 관리제도
 - 가. 수입허가 요건
 - 나. 수입절차

4. 주류관련 세금

- 5. 연료용 알코올 현황
 - 가. 기술개발 동향
 - 나. 연료용 알코올을 시장의 향후 전망

1. 캐나다 주류산업 현황

가. 최근 주류산업 동향

캐나다는 10개 주와 3개 준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체제로서 주류청에서 주류 면허를 소지한 식당 및 술집들은 관리 하면서 직접 주류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알버타(Alberta)주의 경우는 850개 이상의 개인 판매점 형태로 되어 있다. 가장 큰 주류시장은 온타리오(Ontario)주이며 그 뒤를 퀘벡(Quebec)주,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 알버타(Alberta)주 순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내에서는 3,225개의 주류판매점과 에이전트가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데 그 중 약 1500개가 정부 주류 판매점으로 온타리오주의 주류청이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주류 구매자로 알려져 있다. 캐나다에는 3만 개 이상의 호텔과 식당, 바, 클럽 등이 있는데 그 중 퀘벡주에 1만 2천개 이상의 주류 판매 업소가 밀집되어 있다. 주류

면세판매점은 10개의 국제 공항과 미국과 접해있는 국경 지대 36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주류분류는 북미산업분류시스템 (NAICS)¹⁾에 의거, NAICS 312120 (breweries: 맥주양조), NAICS 312130 (wineries: 와인양조), NAICS 312140 (distilleries: 증류주 (양주)양조)의 3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2003년 기준 캐나다의 주류생산 규모는 약 C\$55억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맥주양조 (C\$39억)로 전체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류주가 C\$9억1천만으로 16.4%, 와인이 C\$7억7천만으로 13.9% 순이었다.

1) 맥주

맥주는 2003-4년 회계연도 판매액 기준으로 전체 주류 소비량의 50.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총 판매 실적은 C\$161억²⁾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하였다.

판매량은 총 280억 리터로서 전체 주류 판매량의 8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맥주의 시장 점유율은 11%로 이는 2003-04 회계연도의 수치인 10.2%에서 소폭 증가하였으나 10년 전의 점유율 14%보다는 감소하였다.

15세 이상 1인당 주류소비량은 107.2 리터이었으며 그중 맥주는 86.3 리터를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주요 맥주 제조업체로는 Molson Breweries Limited, Labbat Breweries, Lakeport의 3개사가 있으며 이들 업체들을 중심으로 70여 개 맥주업체에서 300여 개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수입맥주의 경우 미국과 독일, 영국, 아일랜드 등의 유럽국가에서 가장 많은 양이 수입되고 있으며 그 외에 멕시코, 브라질, 칠레 일본과 중국의 맥주도 수입되고 있다.

캐나다인들의 국산맥주 소비량은 2002년까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2-3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반전되었다. 현재까지 국산맥주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지만 지난 3년간 수입맥주의 소비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2003년 3월 31일 발표된 캐나다 연방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맥주시장에서 수입맥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12.2%로 나타났으며 각 주마다 수입맥주를 선호하는 정도는 다르지만 그 중 온타리오주와 퀘벡주에서 두드러지게 수입 맥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입맥주 판매량의 증가는 소비자들의 취향변화보다는 수입맥주 판매업체들이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 차별화 된 마케팅 전략을 내세운 것이 소비자들에게 크게 어필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맥주의 포장형태는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데 병맥주의 경우 355ml에서 800ml까지 다양한 규격으로 출시되는데 보통 마개는 손으로 돌려서 열수 있는 twistable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375ml 캔의 경우 지금까지 수입맥주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국산맥주도 375ml 캔 제품을 새로 출시하고 있다. 아직까지 캐나다에서는 병맥주가 캔맥주보다 많이 판매되고 있으며 빈병을 판매업소에 반납하면 \$0.05를 환불받고 있다.

맥주 알콜도수별 구분

종류	알콜도수
light beer	1.5%~2%
lager, ale, malt, mix	4.5%~5%
stout	5.5%~7%

2)와인

와인의 원료인 포도는 특성상 기후가 서늘한 지역에서만 생산되기 때문에 British Columbia주, Ontario주, Quebec주에서만 포도주가 생산되고 있으며 면허를 보유한 와인 양조업체는 캐나다 전역에 300여 개가 있다.

2003-4 회계연도 기준, 13개 주, 준주 중 캐나다 최대의 인구밀집 지역인 Ontario주와 프랑크계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Quebec주의 와인 소비량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가장 소비량이 낮은 지역은 북부 NWT 준주와 Nunavut 준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3-4 회계연도 기준, 수입와인의 시장점유율은 64.4%로 국산와인의 점유율 35.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수입산 와인이 국산와인 보다 제

주1) 북미산업분류시스템 (NAICS :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의 약자로 캐나다와 멕시코, 미국의 북미3국의 산업별 통계자료를 집계할 때 사용되는 산업별 분류코드

주2) 1C\$: 0.8528US\$

품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입와인에 대한 캐나다 국민의 선호도는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이는 2003-4 회계연도 국산와인의 판매실적이 전년대비 7.3% 증가한 반면 수입산은 4.8%의 판매 증가율에 그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캐나다 Ontario주의 Niagara(나이아가라) 부근과 Quebec주 퀘벡시(Quebec City) 근교에서 재배되는 포도로 만든 Ice wine은 세계적으로 높은 명성을 자랑하고 있다. Ice Wine의 당분 함유도는 14~18 수준으로 원재료인 포도는 한겨울인 12월에서 1월 사이에만 수확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와인은 크게 적포도주와 백포도주로 구분되지만 그 외에도 탄산음료나 향을 가미한 특색 있는 와인(Wine Cooler)도 출시되고 있으며 캐나다 와인시장에서는 적포도주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다. 2003-4 회계연도 기준 와인 판매시장에서 적포도주는 총 165,669,829 L의 판매실적을 기록하며 52.3%의 점유율을 나타냈는데 그 중 72.8%가 수입 적포도주이며 국산와인은 27.2%로 캐나다 소비자들은 국산와인보다 수입와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백포도주 부문에서는 수입와인과 국산와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2.2%, 48.8%로 적포도주에 비해 수입와인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2003-4 회계연도 기준 1인당 와인 소비에 지출한 금액은 C\$153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의 C\$145에 비해 6% 가량 증가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와인 제조업자 협회인 Wine Institute - California Industry 가 집계한 전세계 와인 생산실적 통계에 의하면 캐나다의 와인 생산실적은 이태리나 프랑스, 스페인, 미국 등 주요 와인생산국들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와인의 당분 함유정도에 따라 0부터 20까지 당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종 와인의 알코올 도수는 10~14%이다.

한국산 와인의 공식 수입통계는 2002년부터 기록되어 있으며 캐나다에서 수입와인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한국산 와인의 수입량도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전체 수입와인 시장에서 한국산은 아직까지 확실한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와인류로 분류되어 판매되는 대표적인 한국산 주류는 백세주를 포함한 각종 주류 등이 있는데 그 중 백세주만이 Ontario주 주류청인 LCBO의 직영판매점에서 취급되고 있고 나머지 주류들은 한인 교민이 경영하는 식당이나 술집 등지에서 판매되고 있다.

LCBO의 직영판매점에서 백세주는 375ml 들이 1병당 C\$10.25에 판매되고 있으며 식당이나 술집 등지에서 판매되는 주류들은 C\$15~20 정도에 판매되고 있다.

3)양주

양주는 증류주(Spirit)의 일종으로 대표적인 양주 종류로는 럼 (Rum), 스카치 (Scotch), 테킬라 (Tequila), 보드카 (Vodka), 위스키 (Whisky) 등이 있다. 변형된 양주로는 진한 과일 향 향료와 당분을 감미하여 제조되어 가볍게 마실 수 있는 Cooler가 있는데 캐나다 국민들은 레몬, 산딸기, 딸기향이 감미된 Cooler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인들은 양주 중 Whiskey 종류를 가장 선호하며 그 외에도 Rum과 Vodka에 대한 선호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 위스키는 Crown Royal, Canadian club, Alberta Premium Chivas Regal 18년산, 등이 있으며 Gin 제품으로는 Hendrick's

Gin , Bombay Sapphire 등이 있으며, Rum 제품으로는 Wray & Nephew Overproof Rum, Black

Stripe Rum등이 있으며 Vodca 제품으로는 Belvedere Vodca, POLAR Ice Vodca가 있다.

증류주는 2003년 회계연도 생산량 기준으로 전체 주류 생산량의 1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총 생산액은 C\$9억 1천만으로 정도인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캐나다 총 주류 판매량 280억 리터 중 양주는 7.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 연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3-4 회계연도 양주의 1인당 소비액은 C\$154.0으로서 전체 소비액의 2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세 이상 1인당 주류소비량은 전체 주류 소비량 107.2 리터 중 양주는 7.6 리터를 소비 하였다.

최근 3년간 캐나다의 주류 판매실적

단위 : C\$백만, %

구분	2001~2 회계연도	2002~3 회계연도	2003~4 회계연도	
맥주	금액	7,412.7	7,864.4	8,182.9
	비율	51.1	51.1	50.7
와인	금액	3,383.0	3,696.1	3,967.8
	비율	23.3	24.0	24.6
양주	금액	3,716.1	3,820.7	3,986.3
	비율	25.6	24.9	24.7
합계	14,511.8	15,381.2	16,137.0	

자료원 캐나다 연방 통계청 (Statistics Canada)
주) 회계연도 기간 기준 : 4월 1일 ~ 익년 3월 31일

나. 주요 주류별 수출입 동향

캐나다의 주류수출은 2002년까지 상승, 하락세를 반복하다가 2003년 상승세로 반전 되었다. 양주 수출은 2001년 약 45%의 비중을 보이다 2002년 37%로 하

락하였으나 다음 해인 2003년에는 39%로 다시 상승하였으며 2004년에는 44%를 기록하며 예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최근 와인수출 실적을 살펴볼 때 지난 5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2004년 수출 실적은 전년대비 37.8%라는 만족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 하였다.

주요 수출대상국으로는 미국과 일본이 있으며 이들 두 국가대상의 수출이 총수출의 9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눈에 띄는 변화로는 2004년 대만에 대한 수출실적이 전년인 2003년에 비해 57.3% 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인 현상이다. 주종별로 살펴보면 캐나다에서 생산된 맥주는 미국으로만 수출되고 있으며 2003년 對美 맥주수출이 7.8% 증가하다가 2004년에는 다시 1.8% 감소 하는 등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와인의 경우 캐나다 연방 농무부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자료에 따르면 주로 미국, 대만, 일본, 프랑스, 영국 등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금액기준으로 對美 와인수출이 전체 수출의 45.3%를 차지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일본에 20% 내외가 수출되고 있다. 최근 와인수출 실적을 살펴볼 때 지난 5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2004년 수출 실적이 전년대비 37.8%라는 만족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벨기에와 한국은 2000년까지 와인 수출 실적이 전무했으나 2001년을 시작으로 2004년 수출 증가율이 전년대비 각각 376.4%와 257.4%로 캐나다의 총 와인 수출의 4.4%를 차지하였다. 특히 한국은 2000년 이전까지는 와인의 대중성과 인지도가 부족하여 수요가 많지 않았으나 최근들어 소비자들의 기호변화와 와인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2004년 캐나다의 와인수출

시장의 2.7%를 차지 하였다. 한국으로의 수출실적은 금액기준으로는 2004년 257.4% 증가했으나 수량기준으로는 10.5% 감소한 것으로 보아 2003년보다 2004년에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대가 높은 와인이 보다 많이 수출된 것으로 추측된다.

캐나다 연방 통계청 (Statistics Canada)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의 가장 큰 양주 수출 국가는 미국이며 94%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중국시장의 개방에 따라 중국으로의 수출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2004년 對中 수출은 전년대비 361.3% 증가하며 주요 수출대상국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캐나다 연방 통계청 (Statistics Canada)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주류시장에서 수입비중이 가장 높은 주류 품목은 와인으로 매년 꾸준한 수입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입 주류시장에서 가장 현저한 변화를 나타내는 주종은 양주로 2004년 수입이 전년대비 22.6% 증가 하였으며 주요 수입대상국으로는 미국과 프랑스가 있는데 이들 두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총수입의 42% 내외를 차지한다. 미국과 프랑스 외에도 이태리, 영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유럽지역 및 멕시코, 칠레 등의 중남미 지역에서의 수입도 꾸준한 편이며 호주 역시 상당량의 와인을 캐나다로 수출하고 있다.

맥주의 경우 캐나다의 최대 맥주 수입대상국은 멕시코이며 그 뒤를 미국과 네덜란드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2001년 이후에는 네덜란드로부터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미국을 추월하였다.

와인의 경우는 세계 최대 와인수출국으로 알려진 프랑스가 1위로 캐나다의 와인 수입시장의 29.0%를 차지하고 있으며 호주가 19.6%, 이태리가 18.2%를 나타내고 있다.

양주의 경우는 영국, 미국, 프랑스 3개 국가가 캐나

다 양주 수입시장에서 55.6%를 차지한다. 2003년까지 이들 3개 국가의 뒤를 아일랜드가 따랐으나 2004년에는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이 121.7% 증가하며 아일랜드보다 많은 수량이 수입되고 있다.

2. 정부의 지원제도 및 규제

정부의 지원제도는 캐나다의 주류청이 독자적인 독점권 (국영)을 가지고 있으며 각 주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점이다. 캐나다의 각 주는 자체적으로 주류 위원회를 두고 모든 주류 생산업체의 세금 환급, 수출업체의 부가가치세 환급 및 수출보조금 사후정산 지원, 제품개발 및 품질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등을 총괄하여 관리한다. 연방정부는 모든 주류의 포장과 함유성분과 관련하여 “Liquor Control Act”라는 법령에 규정을 두고 있지만 각 주별로 성분표시 및 주류 판매에 관한 법률은 다소 차이가 있다.

가격책정에 있어 각 주의 협회는 주류의 적절한 판매 가격대를 권장하거나 최고가격 (maximum price)을 제한하는 등 독점권을 갖고 있어서 소매업체에 최고가격 책정을 권유하고 있다.

주류 공급업자들은 협회 자체에서 실시하는 광고와 더불어 소비자에게 구매를 장려하는 프로그램 등을 제작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소비자 대상 홍보 프로그램중에는 각 지점에 소비자들이 주류를 시음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거나 직접 소비자를 방문, 신제품을 홍보하는 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류에 대해 광고를 할 경우 각 브랜드의 양조업체마다 광고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각 주별로 주류접취가 허용되는 법적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광고내용 또

한 협회에서 제한하고 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을 통한 주류광고의 내용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Broadcasting Act 의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ing Regulations 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각 주정부 역시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광고의 내용을 심의 한다. 신문이나 잡지 등 인쇄물을 통한 광고는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법적인 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 대신 각 주 주류청의 규제를 하고 있다.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ing Regulations 중 Code for Broadcast Advertising of Alcoholic Beverages 는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주류광고가 법적으로 주류구입과 섭취가 금지된 연령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제작, 방영 되거나 이들에게 주류구입과 섭취를 권장하는 의미를 포함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류광고가 허용되는 시간대는 현재는 법규로 정해져 있지 않다. 또한 주류업체가 자발적으로 광고 내용의 사전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캐나다 광고표준 위원회 (Advertising Standards Canada: ASC)는 주류광고가 연방정부 및 각 주 주류청이 제정한 기준에 합당한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협회는 최상의 제품을 개발하고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공급원들에게 기술개발 및 습득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대금 지불 기간과 관련하여 주류청에서 신제품을 구입할 경우 90일의 대금 납부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주류청의 상품목록에 기재되고 상품배급이 진행된다면 주류청은 상품을 납품한 주류업체에게 상품 수취후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불토록 하고있다. 그러나 British Columbia주나 Alberta주의 경우는 위탁판매에 의한 상품만 판매하기 때문에 주류업체는 판매된 수량에 대해서만 대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기타 지원기관으로는 캐나다 주류시장의 확장과 이익창출을 위해 1998년 The Kirkwood Group (T.K.G) 이 있으며. TKG는 개인 주류 업체들을 대표하는 국가적인 판매와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사항으로 캐나다 정부는 국산주류의 품질 개선을 위해 각 주마다 수출허가 면허를 제정, 품질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수출허가 및 면허에 대한 규정은 각 주마다 “Liquor Corporation Act”, “Liquor Control Act”, “Liquor Licensing Regulations”에 기재되어 있다.

3. 수입 관리제도

가. 수입허가 요건

주류 수입 허가는 주정부 또는 각 주의 해당 관할기관에서 부여하는 권한을 의미하며 개인은 상업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는 캐나다 내 또는 국외에서 주류를 수입, 관리 또는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정부제정 법규에 따라 각 주의 해당 관할기관에서 주류수입 허가를 소유한 개인은 이러한 금지사항에서 제외되어 있다.

캐나다로 반입되는 모든 수입품은 7% 상품용역세 (Goods and Services Tax 이하 GST)를 부과하고 있으며 캐나다 정부는 맥주와 양주에 대해 Excise Duty(주류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와인은 주류세금을 면제 받고 있으나 대신 고가품 소비세(Excise Tax)를 징수한다.

주류상품이 국내로 반입될 경우, 또는 국외로 수출될 때 모든 화물수송용 단위 (Conveyances, Containers, or Compartments)들은 통관인증과 함

게 봉인되어야 한다. 상표상 성분표시 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모든 식품에 포함된 탄수화물, 단백질과 지방 함량의 성분을 소비자들이 알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전 세계 소비자 협회는 각 성분의 정확한 표시를 권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대부분 주류의 경우 이와 같은 영양소의 함유량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종류 식품과 같이 정확한 표기는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상표표기는 영어로 해야 하며 글자 크기 규정은 각 주마다 차이가 있다. 필수 기재사항으로는 제품명, 용량, 알코올도, 스탠더드 드링크, 첨가물 내역, 알러지(Allergy) 유발가능 물질의 공표, 업체명 및 주소, 원산지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가 제정한 규정에 따라 가공된 식품은 ① 최소 이상의 등급 혹은 기본요소 함량 ② 규격화된 용기 ③ 정확한 상표를 라벨에 기재해야 한다.

나. 수입절차

모든 품목에 관한 수입절차는 캐나다 관세청(CBSA: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에서 관리하며 주류의 경우 'Importation of Intoxicating Liquors Act' 를 준수해야 한다. 'Intoxicating Liquors' 에는 모든 종류의 주류의 불법적인 판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허가나 인증서 없이 판매될 수 없음을 정하고 있다. 수입 절차전 확인 사항 으로는 ① 수입 전 캐나다로 수입 가능한 품목인지 확인 ② 수입품목의 생산국가와 생산업체의 소속국가 확인 ③ 수입품목의 HS Code (10digit tariff classification number) 확인 ④ 수입품목의 HS Code에 해당하는 관세율 인지 확인해야 된다.

4. 주류관련 세금

캐나다 관세청 (CBSA-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이 수입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고 있으며 주류 관세는 세 관표에 제시된 Section 4. "PREPARED FOODSTUFFS; BEVERAGES, SPIRITS AND VINEGAR; TOBACCO AND MANUFACTURED TOBACCO SUBSTITUTES" 22 장(Chapter 22 BEVERAGES, SPIRITS AND VINEGAR) 에서 표기된 세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알코올 성분(alcoholic strength by volume)은 20^o 실온을 기준으로하고 있다. 캐나다는 주류 수입시 수출 국가별로 차등하여 9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GPT(General Preferential Tariff)에 해당한다.

캐나다 정부는 수입 양주에 대해 12¢ per litre of absolute alcohol(LPA) 의 특별소비세(Special Excise Duty)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양주배달 혹은 주류면허 소유자가 수입 납부할 수 있다. 또 캐나다 정부는 GST(7%)라는 상품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를 징수하는데 이는 캐나다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에 적용하고 있다.

이외에 각 주에서는 O.R.S.T. (Ontario Retail Sales Tax, 소매판매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수입자 또는 소비자에게 부과하거나 소비되는 대부분의 상품과 정해진 서비스에 한해서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소매세가 추정되지만 Alberta주, Yukon 준주, Northwest Territories 준주에서는 판매세가 부과하지 않으나 이들 주 외의 역에서는 각각 주별로 다른 PST (Provincial Sales Tax, 주 판매세)세를 부과하고 있다.

HS 코드	상품명	중량	MFN	GPT (한국)
2203	맥주 (맥아주) -	무	무	
2204	와인 (보강와인 포함)			
	101000 알코올 농도 22.9% 미만	LTR	37.4 ¢/litre	N/A
	알코올 농도 13.7% 미만			
	211010 아이스 와인	LTR	3.74 ¢/litre	N/A
	212091 백포도주 (white)	LTR	3.74 ¢/litre	N/A
	211092 적포도주 (red)	LTR	3.74 ¢/litre	N/A
2205	베르무트주(Vermouth)와 향이 첨가된 포도주			
	2litre 이하의 용기에 포장된 것			
	1010 알코올 농도 18.3% 미만			
	101010 백포도주 (white)	LTR	2.11 ¢/litre	N/A
	101020 적포도주 (red)	LTR	2.11 ¢/litre	N/A
	101030 장미주 (rose)	LTR	2.11 ¢/litre	N/A
	101090 기타	LTR	2.11 ¢/litre	N/A
2206	기타 발효주			
	사과주 (cider)			
	001100 알코올 농도 22.9% 미만	LTR	28.16 ¢/litre	N/A
	001200 기타 발효주	LTR	28.16 ¢/litre	N/A
	사케 및 기타 와인, 알코올 농도 13.7% 미만			
	과일			
	005011 코셔, 흑딸기 (Kosher, blackberry)	LTR	2.82 ¢/litre	N/A
2207	에틸알코올 본 성분을 80% 이상 함유한 주류 또는 증류주 및 기타			
	10 에틸알코올 80% 이상 함유한 주류			
	101000 알코올 음료 혹은 증류주를 원료로 사용 되는 경우	LPA	12.28 ¢/litre of Absolute ethyl alcohol	N/A
	109000 기타	LPA	4.92 ¢/litre of Absolute ethyl alcohol	N/A
2208	에틸알코올 본 성분을 80% 미만 함유한 주류 또는 증류주 및 기타			
	2000 증류하여 만든 포도주나 포도 브랜디 같은 증류주			
	200010 큰 용기에 담긴 것	LPA	무	무
	3000 위스키			
	버번 위스키			
	300011 큰 용기에 담긴 것	LPA	무	무
	스카치 (scotch) 위스키			
	300030 아이리쉬 (Irish)	LPA	무	무
	300040 라이 (Rye)	LPA	무	무
	40 럼과 타피아 (Rum and Tafia)			
	4010 럼			
	401010 큰 용기에 담긴 것	LPA	24.56 ¢/litre of Absolute ethyl alcohol	무
	402000 타피아	LPA	12.28 ¢/litre of Absolute ethyl alcohol	무
	5000 진과 제네바 (Gin and Geneva)			
	500010 큰 용기에 담긴 것	LPA	4.92 ¢/litre of Absolute ethyl alcohol	무
	600000 보드카 (Vodka)	LPA	12.28 ¢/litre of Absolute ethyl alcohol	6 ¢/litre of Absolute ethyl alcohol
	700000 리퀴 와 코디알 (Liqueurs and Cordials)	LPA	12.28 ¢/litre of Absolute ethyl alcohol	무
	901000 데킬라 (Tequila)	LPA	무	무

주) LTR: 리터, LPA: 리터당 순 알코올 (litre per absolute alcohol)

litre of Absolute ethyl alcohol: 리터당 순 100% 에틸알코올 / HTL: hectolitre, 무: 무관세, N/A: 해당사항 없음

주류 내국세 세율 및 가격

주류 내국세 세율	
SPIRITS(양주)	Rate(가격)
Spirits (일반 양주)	\$11.066 per litre of absolute ethyl alcohol
Spirits 7% 미만의 에틸알코올 포함	\$0.2459 per litre of spirits
Spirits – special duty(특별 세금) (주류면허 소지자에게 양주를 수입하거나 수입된 양주 배달시)	\$0.12 per litre of absolute ethyl alcohol
BEER(맥주)	Rate(가격)
5% 이상의 에틸알코올 포함	\$27.985 per hectolitre
1.2%~2.5% 미만의 에틸알코올 포함	\$13.990 per hectolitre
1.2% 미만의 에틸알코올 포함	\$2.591 per hectolitre
WINE(와인)	Rate(가격)
중량 내 1.2% 미만 에틸알코올 포함	\$0.0205 per litre
중량 내 1.2%~7% 미만 에틸알코올 포함	\$0.2459 per litre
중량 내 7% 이상 에틸알코올 포함	\$0.5122 per litre

5. 연료용 알코올 현황

가. 기술개발 동향

알코올 종류 중 에탄올(ethanol)은 대체연료로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알코올 연료는 다양한 종류의 농작물 (사탕수수, 사탕무, 옥수수, 카사바, 해바라기, 유칼립투스 등)로부터 생산이 가능하다. 매년 곡물에서 추출한 1억3천만 리터의 에탄올이 생산되고 있으며 2010년 즈음에는 연간 생산량이 6억5천만 리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에서 에탄올 생산에 사용되는 곡물은 그 종류가 다양하나 보리, 옥수수, 식용밀 등 타

곡물에 비해 가격이 낮은 곡물이 주로 에탄올 생산에 사용되고 있고 대체식물에서의 에탄올 추출도 연구 중에 있다. 현재 곡물에서 추출된 에탄올은 운송수단 연료의 첨가물로의 사용이 허가되며 1천개 이상의 연료 판매점에서 에탄올 혼합연료(E10)를 취급하고 있다. Natural Resources Canada(캐나다 자원 연구 및 개발부)에서 지속적으로 에탄올을 친환경적 연료로 연구 개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NRC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리터의 Biomass 에탄올은 1리터의 가솔린을 대체할 수 있는 동시에 지구 온난화 현상의 주범인 공기 내 이산화탄소 누적을 70%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연료용 알코올 시장의 향후 전망

1974년 당시 리터당 C\$2.50이었던 나무에서 추출된 에탄올의 캐나다 내 판매가격은 지속되는 연구개발 추세에 따라 2005년 현재 C\$0.30 선으로 하락하였으며 10년 이내에 C\$0.22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NCR 산하의 연구기관 (Canmet Energy Technology Centre-CETC)은 캐나다 내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실적이며 상업적인 목적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가격과 실용적인 면에서는 가솔린이 에탄올보다 우수하지만 환경적인 요소들을 감안하였을 때 지구 온난화 현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에탄올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